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시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2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 검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마. 교통소통대책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도지사는 충청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도로법」 제56조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교통소통대책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 한 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점용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6조는 공사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교통분야 공무원을 지정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18. 11. 15.~'18. 11.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